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7년 3월 9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당해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단체 중 개별법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를 조문에 명시하여 시민들이 대상단체와 성격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단체 명시 (안 제4조제1호)
 - 개별법에 지원 규정이 있는 국민운동지원단체(종로구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종로구협의회), 안보관련단체(한국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종로구지회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 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 계획과장으로 변경(안 제10조제3항제1호)

III. 검토의견

-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경비, 또는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운영비로써(행정자치부 훈령 제203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 제2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민들에게 공급하기 어려운 서비스를 민간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공익적 활동을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민·관의 연계를 높이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안 제4조) 중 국민운동지원단체, 안보관련단체 및 대한노인회종로구지회를 조문에 직접 명시하였는데,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규정에 반하지 않고 시민들이 지원대상단체와 성격을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 또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10조)과 관련하여 당연직 위원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계획과장”으로 변경하였는데, 보조금 지원 및 운영실태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소관 과장이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므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IV.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9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제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第3條 (出捐金の 交付等)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새마을運動組織의 운영에 필요한 費用에 充당하기 위하여 出捐金 및 補助金을 交付할 수 있다.

○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

第3條 (出捐金の 교부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바르게살기運動組織에 대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費用에 充당하기 위하여 出捐金 또는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第3條 (出捐·補助等)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總聯盟에 대하여 그 組織과 活動에 필요한 運營經費와 施設費 기타 經費를 補助할 수 있다.

○ 노인복지법

第23條 (老人社會參與 지원)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老人의 地域奉仕 활동 및 就業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老人地域奉仕機關, 老人就業斡旋機關 등 老人福祉關係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